

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(장종태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11060
----------	-------

발의연월일 : 2025. 6. 25.

발 의 자 : 장종태 · 문진석 · 이성운
안규백 · 김영환 · 김기표
김선민 · 박지원 · 김남희
전종덕 · 신장식 의원
(11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연고자가 없거나 연고자를 알 수 없는 시신에 대하여 시장등이 장례를 치르도록 규정하고 있음.

그런데 무연고 사망자의 연고자를 찾더라도 연고자가 장례 절차를 거부하고 재산 상속만을 선택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음. 현행법에 따르면 이러한 경우에도 시장등이 시신을 처리하여야 하지만, 그 비용을 상속자로부터 받을 수 있는 수단은 소송 제기 외에는 없는 상황임.

이에 무연고 사망자의 재산을 상속받은 사람이 있는 경우 시장등이 무연고 사망자의 시신을 처리한 비용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, 상속자가 그 비용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시장등이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그 비용을 징수할 수 있게 함으로써 사망자의 재산을 상속받은 사람이 사망자의 장례 비용을 부담하게 하려는 것임(안 제12조의 3 신설).

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장에 제12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12조의3(상속자에 대한 무연고 시신 등의 처리비용 청구) ① 시장등이 제12조에 따라 무연고 시신 등을 처리한 경우 시장등은 그 처리비용(제12조제6항에 따라 국가로부터 지원받은 금액 및 제12조의2에 따라 유류금품을 처분하여 충당한 금액은 제외한다)을 무연고 사망자의 상속재산을 취득한 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. 이 경우 상속재산을 취득한 자가 다수인 경우에는 취득한 상속재산의 비율에 따라 무연고 시신 등의 처리비용을 청구하여야 한다.

② 제1항에 따라 비용을 청구받은 사람은 취득한 무연고 사망자의 상속재산의 범위 내에서 그 비용을 시장등에게 지급하여야 한다.

③ 시장등은 무연고 사망자의 상속재산을 취득한 자가 제2항에 따라 비용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그 비용을 징수할 수 있다.

④ 그 밖에 시신 등의 처리비용의 청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적용례) 제12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무연고 사망자가 발생한 경우부터 적용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u><신 설></u>	<u>제12조의3(상속자에 대한 무연고 시신 등의 처리비용 청구) ① 시장등이 제12조에 따라 무연고 시신 등을 처리한 경우 시장등은 그 처리 비용(제12조제6항에 따라 국가로부터 지원받은 금액 및 제12조의2에 따라 유류금품을 처분하여 충당한 금액은 제외한다)을 무연고 사망자의 상속재산을 취득한 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. 이 경우 상속재산을 취득한 자가 다수인 경우에는 취득한 상속재산의 비율에 따라 무연고 시신 등의 처리비용을 청구하여야 한다.</u> <u>② 제1항에 따라 비용을 청구 받은 사람은 취득한 무연고 사망자의 상속재산의 범위 내에서 그 비용을 시장등에게 지급하여야 한다.</u> <u>③ 시장등은 무연고 사망자의 상속재산을 취득한 자가 제2항</u>

에 따라 비용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그 비용을 징수할 수 있다.

④ 그 밖에 시신 등의 처리비용의 청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